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GANGWON STATE COUNCIL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council.gangwon.kr

강원의정

2025 | 통권 217호

# 강원 의정

2025. 5.  
통권 제217호  
제336회 임시회

GANGWON STATE COUNCIL  
MAGAZINE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을 위해 실천하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식 홈페이지  
council.gangwon.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gwcouncil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wcouncil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유튜브  
youtube.com/@gwstatecouncil

# 강원 의정

2025 | VOL.217



## 표지이야기

전국 최대높이 고도 800m의 활공장 정상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의 모습을 보며,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영월군 봉래산 산봉우리의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발행일 2025년 5월 8일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편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기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보담당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우 24266)

문의 033)249-5169

FAX 033)249-5023

[강원의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angwon.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정프리즘



02 제336회 임시회  
06 주요 조례 인사이드  
30 5분 자유발언

## 위원회 활동



42 의회운영위원회  
44 기획행정위원회  
46 사회문화위원회  
48 농림수산위원회  
50 경제산업위원회  
52 안전건설위원회  
54 교육위원회  
56 특별위원회

## 현장스케치



60 사진으로 보는 의정

## 강원의 보물을 찾아서



66 동해, 삼척

## 강원의 나무, 시간을 품다



70 춘천

## 생활상식



72 강원도의 드라이브 명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2025. 4. 8.(화) ~ 4. 15.(화), 8일간

4. 8.(화) ~ 4. 15.(화), 8일에 걸쳐 심의한 안건은 조례안 46건을 비롯한 동의안 7건, 기타 7건 총 60건으로, 원안가결 50건, 수정가결 8건이며,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발표하였으며, 4. 15.(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과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차기 취임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

제336회 임시회 | 2025. 4. 8.(화) ~ 4. 15.(화), 8일간






---

**접수 59건 | 처리 60건**

원안가결 50건 | 수정가결 8건 | 부결 2건 | 계류 0건






---

#### 제안자별

 <b>의장</b> 5건	 <b>위원장</b> 3건	 <b>의원</b> 43건	 <b>도지사</b> 9건	 <b>교육감</b> 0건
--	---	--	---	---









---

#### 의안별

 <b>조례안</b> 46건	 <b>예·결산안</b> 0건	 <b>동의안</b> 7건	 <b>규칙안</b> 0건	 <b>청원·기타안</b> 7건
--	---	--	---	--

---

#### 위원회별

의회운영  <b>4건</b>	기획행정  <b>6건</b>	사회문화  <b>13건</b>
농림수산  <b>11건</b>	경제산업  <b>5건</b>	안전건설  <b>3건</b>
교육  <b>13건</b>	본회의  <b>5건</b>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의안접수 및 처리 안건		제336회 임시회   2025. 4. 8.(화) ~ 4. 15.(화), 8일간		
접수 59건   처리 60건		원안가결 50건   수정가결 8건   부결 2건   계류 0건		
구분	안건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의결결과
조례안 (46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관희 의원	의회운영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순 의원	기획행정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길로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사회문화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오섭, 유순옥 의원	〃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진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윤길로, 정재용 의원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최종수,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이지영, 진종호, 한창수 의원	농림수산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최종수,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이지영, 진종호, 한창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이지영, 진종호, 최종수, 한창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이지영, 진종호, 최종수, 한창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왕규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김희철 의원	〃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이지영, 진종호, 최종수 의원	〃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이지영,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엄윤순, 진종호, 최종수, 한창수 의원	〃	〃

### 의안접수 및 처리 안건

제336회 임시회 | 2025. 4. 8.(화) ~ 4. 15.(화), 8일간

접수 59건 | 처리 60건

원안가결 50건 | 수정가결 8건 | 부결 2건 | 계류 0건

구 분	안 건 명	제 안 자	소관위원회	의결결과
조례안 (46건)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엄윤순,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이지영, 진종호, 최종수, 한창수 의원	농림수산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박대현, 박호균, 엄윤순, 이지영, 정재웅, 진종호, 최종수, 한창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	''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경제산업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석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	부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김왕규, 양속희, 최규만 의원	안전건설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미희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석균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양속희 의원	교육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엄기호 의원	''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원미희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민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김길수, 김기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찬성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찬성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승진 의원	''	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김희철 의원	''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이지영, 전찬성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	''	
동의안 (7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지사	기획행정	원안가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34회 계류)	''	''	''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	사회문화	''
	(재)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	''	''	''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	''	''	''

구 분	안 건 명	제 안 자	소관위원회	의결결과
동의안 (7건)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도지사	경제산업	원안가결
	(재)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	''
기타안 (7건)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본회의	''
	휴회의 건	''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	''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계류안건: 16건

2025. 4. 15. 기준

구 분	안 건 명	회부일	상정·심의일	상임위	비고
조례안 (15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7.	'23.2.7.	운영위	제3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23.6.30.	'23.7.13.	안전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6.30.	'23.7.11.	사문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3.6.30.	'23.7.10.	운영위	''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2.2.	'24.2.20.	농수위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24.4.5.	'24.4.17.	교육위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24.5.24.	-	운영위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9.27.	'24.10.8.	사문위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9.27.	'24.10.8.	교육위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제332회계류)	'24.9.27.	'24.11.25.	안전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10.25.	'24.11.21.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10.25.	-	교육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1.22.	-	''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1.22.	-	기행위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2.21.	-	사문위	제335회
동의안 (1건)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동해북부선(강릉~제진)적기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3.1.27.	-	운영위	제316회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박관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춘천1

### 제정이유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기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한 갑질 행위 방지 체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갑질 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타인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따돌림, 심리지배(가스라이팅),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실행방안 등 세부 계획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등)]
-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갑질 행위자 ▲갑질 행위의 내용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5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제2항]
-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치)제1항]
-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 [안 제9조(징계 등 조치)제1항]
- 의장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함. [안 제9조(징계 등 조치)제2항]
-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해야 함.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안 제9조(징계 등 조치)제3항]
- 누구든지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안 제10조(보복행위 신고)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승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강릉5

### 개정이유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분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회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함. [안 제3조(적용 범위)]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함. [안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2항]
- 규정의 실익이 없는 현행 제10조, 제15조는 삭제함.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윤길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무소속·영월2

### 개정이유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과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임을 명확히 밝힘. [안 제1조(목적)]
- “문해해득교육” 정의 후 약칭 용어로 “문해교육”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문해교육”으로 개정함. [안 제3조(정의)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문관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태백2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효과 극대화 및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3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함. [안 제7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김희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춘천2

### 개정이유

고문변호사의 위촉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단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함. [안 제2조(위촉)제1항]
-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안 제3조(임기 등)제1항]
-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안 제8조(정보공개)제1항]
-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음. [안 제8조(정보공개)제2항]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심오섭**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강릉2

공동발의: **유순옥** 의원  
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 제정이유

-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고전적 인식에서 벗어나 생활화, 세계화를 통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음악 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예정에 따라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
-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의 편곡 및 현대음악과의 융합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국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6조(국악 진흥 사업)]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승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강릉5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 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일·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그 밖에 일·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5조(추진사업)]
- 도지사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안 제7조(포상)]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길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무소속·영월2

공동발의: 정재웅 의원  
경제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 제정이유

최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자생지의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분포지 보호활동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천연기념물의 생존 및 보전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보호활동 지원)]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음. [안 제5조(보호활동 점검)]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심오섭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강릉2

### 개정이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와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함. [안 제2조의2(도지사의 책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안 제16조의2(위원의 임기)]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기홍 의원  
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원주3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도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제3항]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함. [안 제4조(교육 및 홍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음. [안 제10조(평가 및 반영)제2항]
- 규정의 실익이 없는 현행 제4조(교육 및 홍보)제3항,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제2항, 제7조(도민참여)제1항, 제9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제11조(시행규칙)는 삭제함.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조성운 의원  
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삼척1

### 개정이유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획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고위험군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안 제4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1조(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2조(업무 위탁)]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승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개정이유

2024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문 규정 순서 변경, 어문 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시·군별 “적정 탐지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군별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안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제2항제3호]
- 규정의 실익이 없는 현행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제7조(신고 체계 마련), 제12조(시행규칙)를 삭제함.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유순옥 의원  
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 개정이유

조례의 일부 조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경우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름. [안 제2조(정의)]
- 문화예술교육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모든 도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기본원칙)]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와 연결된 인턴십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5조(문화예술교육 사업)제1항]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경비지원)제1항]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음. [안 제7조(지도·감독)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관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춘천1

### 개정이유

2023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국제문화교류협회의 관련 조문 정리 및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에 따름. [안 제2조(정의)]
- 규정의 실익이 없는 현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국제문화교육협의회 설치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사업)제3호,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경비 지원), 제11조(포상), 제12조(시행규칙)를 삭제함.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종수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공동발의: 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종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재정지원)]
- 도지사는 시·군에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제6조(홍보 등)제1항]
-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판매업자에 대하여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 [제6조(홍보 등)제2항]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최중수**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공동발의**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화훼 생산 기반시설 조성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화훼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화훼문화 체험 및 활성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권혁열**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공동발의**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음. [안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6조(실태조사)]
-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수산식품 시제품의 개발 및 홍보 사업 ▲수산식품의 국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혁열**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공동발의**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묘 생산 시설·장비 현대화 ▲종자·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종자·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5조(추진사업)]
-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왕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양구

### 제정이유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하며,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반려식물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5조(실태조사)제1항]
-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사업자 경영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반려식물 병원, 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6조(지원사업)]
-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제1항]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김희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춘천2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하며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신설·개조·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도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대상과 범위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보조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이지영 의원  
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공동발의: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탄소 저장 능력이 최대 50배 이상 빠르기에 탄소 저장에 용이함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조사, 보전, 조성, 관리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정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갈피림 등을 말하며 ▲“미인정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하며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인정탄소흡수원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제2호·제3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제1항]
-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안 제6조(조사·연구)]
-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 복구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7조(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안 제8조(홍보)]

##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엄윤순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공동발의: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 및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제1항]
-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유치 ▲그린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안 제7조(육성 사업)]
-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8조(우선구매)제2항]
-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제1항]
-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를 둠. [안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복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고성

**공동발의** 염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박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화천), 박재균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강릉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정재웅 의원(경제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한창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감자류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가공·유통·판매·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의 명품화 및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자를 말하며 ▲“감자제품류”란 감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하며 ▲“감자산업”이란 감자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감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시설·자재·장비 지원 ▲가공·유통·판매·수출·홍보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재정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창수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1

**공동발의** 염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인제), 권혁열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강릉4), 김정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철원1), 박길선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원주1), 이지영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진중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양양),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평창2)

### 개정이유

안정적인 양봉산업 유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을 확대하고,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과 동시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육중인 꿀벌의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방지와 관련 약품·검사 등에 관한 사업 ▲밀원식물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 ▲양봉농가 주변 등 밀원식물 조성 사업 ▲양봉농가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안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재석 의원  
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동해1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매장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석회석을 활용한 시멘트 제조업은 주력 산업 중 하나임. 석탄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산업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석탄 산업과 달리 석회석 폐광지역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물론, 폐광 이후 지역경제에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석회석 폐광산 지역”이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산 중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는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을 말하며 ▲“광산피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해소하고,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에 대해 ▲산림·토양 훼손 등 생태변화에 관한 사항 ▲광산피해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4조(실태조사)제1항]
-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 ▲민간투자의 유치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대체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민간투자의 유치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안 제5조(추진사업)]
-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방지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안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임미선 의원  
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 개정이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분쟁 발생 이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2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제2항]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 김왕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양구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하며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실태조사)제1항]
-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원미희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 구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함. [안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안 제5조(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안 제6조(전담 조직의 업무)]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 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안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제1항]
-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대행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안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제1항·제2항]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하석균** 의원  
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원주5

### 폐지이유

조례 시행 이후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발의: **원미희**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 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 발전으로 원격교육이 학교 교육 방법의 한 축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원격교육이 학교 교육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에 대처할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격교육”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하며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또는 노트북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제3항]
-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원격교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원격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교원의 원격교육 운영 역량강화 사업 ▲원격교육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6조(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제1항]
- 교육감은 학생 및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제1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9조(원격교육 발전위원회 설치·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엄기호**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철원2

###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신도시 중심 도시개발로 인한 폐교재산 증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름.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 [안 제5조(폐교재산 활용 계획의 수립)]
- 교육감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 위원회를 둠. [안 제6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김기하**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동해2

### 개정이유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생활 및 가정·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 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지원계획)]
-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학생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6조(지원사업)]
-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김길수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영월1

공동발의: 김기하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동해2

### 개정이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 방법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음.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5조(사업)제1항]
-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보조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전찬성 의원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8

###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구교육”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6조(전문가 협의)]
-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교원 연수)제1항]
-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김희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춘천2

### 개정이유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재사고예방”이란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 활동을 말함. [안 제2조(정의) 제2호·제3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학교 화재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제1항]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에 속한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제2항]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제3항]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이지영** 의원  
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공동발의: **전찬성** 의원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8

### 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공동주택 개발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후 건물 개축 및 학교 신설·이전 사업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과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공간 계획 혁신과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환경,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시설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학생 발달 단계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저탄소·친환경·생태적 요소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안 제3조(기본원칙)]
-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돌봄,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부채납 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육시설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2항]
-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7조(자문단)]
-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으며, 농어촌학교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거나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밀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안 제8조(농어촌학교 등)]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김용래** 의원  
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강릉3

### 개정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호]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 [안 제4조(적용범위)]
- 소속 기관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전시·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소속 기관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기능)]
-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2조(교육)]
-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3조(행사 등)]



# 주요 조례 인사이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원미희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목적)]
-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말하며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3호·제4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 교원 수급 상황, 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지정해야 함. [안 제7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음. [안 제7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제4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규만 의원  
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형성2

공동발의: 양숙희 의원  
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춘천6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부대 근거지 및 시설을 말하며 ▲“소음피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하며 ▲“소음피해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음피해를 입은 유치원 또는 학교를 말함. [안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지원사업)]
- 교육감의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지원사업의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의 설치·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전찬성 의원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8

### 개정이유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사회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진술권 보호 및 적절한 조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이 의견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함. [안 제2조(정의)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에 따른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의2(장애학생 등 학생 조력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재민 의원  
교육위원회·국민의힘·원주4

### 개정이유

- 학생들이 정장형 단체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복의 범주를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학교주관 공동구매 시 교복 가격 및 품질 담합,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등 책무를 강화하여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교복”이란 학교에서 규정하여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을 말하며,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복의 범주를 확대함. [안 제2조(정의)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복 가격 및 품질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제3항]
- 학교의 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제4항]
-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도 또는 국민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함. [안 제4조(지원대상)]
- 지원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품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고려사항에 품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제6조(지원금액)제2항]

# 5분 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릉4

## 2042년 동계올림픽,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유치할 것을 제안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2042년에 동계 올림픽을 다시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철도·도로 등 SOC와 경기장이 갖춰져 있어 추가 비용 없이 대회 개최가 가능하며, 2042년 동계 올림픽은 아시아 개최 우선권 있기 때문에 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또한, 정선군 케이블카 철거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원도가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영욱 의원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흥천1

## 체험학습 위축 문제 해결 방안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필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솔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체험활동이 위축되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수학 여행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판단과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 5분 자유발언

한창수 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횡성

## 노후화된 강원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과 실질적 재정 지원 확대 촉구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은 평균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고, 낮은 총원율과 재정 부족으로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 지원으로 인해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발달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 보조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 개선 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유순옥 의원 | 사회문화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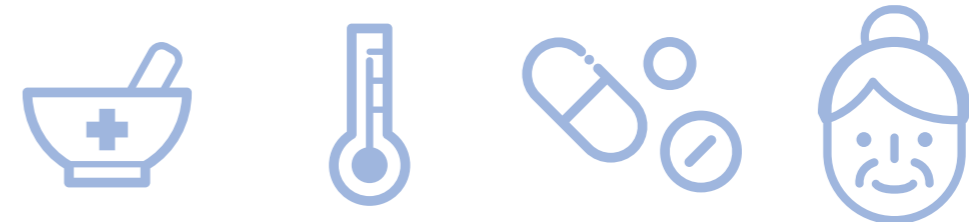
##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하여, 많은 장기요양 노인들이 자택이 아닌 원치 않는 병원 임종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며, △가정형 호스피스와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돌봄 체계 구축, △도 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양구

접경지역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관광·공동체 기반 정책 제안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접경지역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위축과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년의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호균 의원 | 사회문화위원회, 국민의힘, 강릉

강릉 안반데기 진입도로의 지방도 승격 및 안전 개선 촉구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8.(화)



강릉 안반데기는 전국 최대 고랭지 배추 주산지이자 관광지로서 매년 많은 차량이 오가지만, 진입도로인 '강릉시 도로 12호선'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은 산간 지형의 좁은 1차선 도로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도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 차원의 예산과 관리가 가능한 '지방도 승격'이 절실합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진중호 의원 | 농림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양양

도내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허용 확대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학생들의 진로 변경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 부적응과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국적 기준과도 어긋납니다.

학생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열 간 전입학을 허용하고,진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지침을 재검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부합하는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영월

핵심광물 텅스텐의 확보경쟁과 우리의 전략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상동 텅스텐 광산은 세계 최고 품질의 광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순도 정제(2차 가공)는 해외 의존 구조로 인해 자원 역수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독일 등은 상동 광산을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확보 에 나서는 반면, 국내는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2차 정제시설 유치, 전략광물 지정, 국가적 보호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원제용** 의원 | 사회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원주6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에 대하여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박윤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주2

##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강원만의 새로운 시작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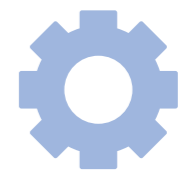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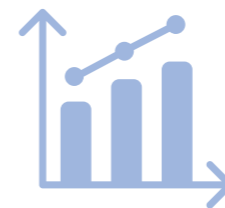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한류·한상·한인 대학'과 '고령 친화 대학'을 양대 축으로 한 강원형 인구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안합니다.

한류 팬과 재외동포,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해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 제온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며 활동적인 고령자 환경을 조성한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도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세대 통합적 접근 강화,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시군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 고령친화도시로 발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참여와 도정의 지속적 관심과 실행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 경제산업위원회, 국민의힘, 태백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화로운 균형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제도 마련과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구소멸과 고령화, 지역 간 격차 등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여전히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 자치권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수 증대와 재정특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치권과 행정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기홍 의원 | 사회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원주3

GJC·GD 영업양수도에 관해 최선의 대응 방안과 MDA의 공개·재검증이 필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간 통합은 사실상 '차악'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며, 뚜렷한 대안과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는 △MDA 전면 공개, △투자 이행 사항의 투명하고 세밀한 재검증, △MDA상 조항 조정 검토 등을 통해 보다 책임 있고 명확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 **강정호, 김용래, 박대현, 양숙희, 엄기호, 유순옥, 이지영, 전찬성, 진중호, 최승순**

## 소관업무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 의회운영 관련 각종 조례·규칙 등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운영위원회, 4. 8.(화)]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 ▶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의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안 심사 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영)는 4월 8일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과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 동안의 업무 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구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하여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갑질 행위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문구와 용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관현** | 부위원장 **박대현**  
위원 **김왕규, 김희철, 박윤미, 윤길로, 지광천, 최승순**

## 소관업무

· 기획조정실, 행정국, 특별자치추진단, 총괄 기획관,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10.(목)]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 원안가결

### [현지시찰, 4. 9.(수)]

- ▶ 강원학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서울특별시 일원)



## 강원학사,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시찰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대현)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을 심사하고 강원학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현지 시찰하였다.

먼저, 4월 9일에는 강원학사를 방문하여 생활 환경과 시설 현황을 확인하면서, 강원학사의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도의회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건 심사를 위해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현장 점검하면서, 사용료 감면을 통한 진품센터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4월 10일에 개최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3호의 조문 중 “강원자치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원재용 | 부위원장 유순옥  
위원 김기홍, 박기영, 박호균, 이승진, 임미선, 조성운

## 소관업무

· 문화체육국, 복지보건국, 관광국, 대변인,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9.(수)]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제2차 위원회, 4. 10.(목)]

-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제3차 위원회, 4. 11.(금)]

- ▶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 : 원안가결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13건 안건 심사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원재용)는 4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소관 실국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였다.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4.9.(수))에서는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도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의 취지는 인정되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집행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원안동의하였다.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4.10.(목))에서는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다.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심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언적·형식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다.

유순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윤길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지원 조례안」은 도내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의 장려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전문예술 지원 선정 이후로도 중간관리를 통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방지를 당부하며 원안동의하였다.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4.11.(금))에서는 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다.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대응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회 종료에 따른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신규) 동의안」은 관광객 유치와 사업의 성패를 위해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동의하였다.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엄윤순** | 부위원장 **진중호**  
 위 원 **권혁열, 김정수, 박길선, 이지영, 최중수, 한창수**

## 소관업무

농정국, 산림환경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9.(수)]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제2차 위원회, 4. 11.(금)]

-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등 11건 조례안” 등 심사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는 본격적인 산불 위험 시기를 맞아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다.

먼저 권혁열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이지영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 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엄윤순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업생명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산업 육성 전략이 될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다음으로, 한창수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 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 으로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 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최중수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 회복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복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 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를 전국적인 명품 작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권혁열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종자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종자산업 자립 기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다.

4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해당 조례는 급수공사 비용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일부 조항 문구 수정 후 수정가결되었으며, 최종수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고, 김왕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홍 | 부위원장 강정호  
위원 김용복, 박관희, 심영근, 이한영, 정재응, 최재석

## 소관업무

·경제국, 산업국, 미래산업국, 국제협력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9.(수)]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결
- ▶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원안가결

### [현지시찰(동해, 삼척), 4. 10.(목) ~ 4. 11.(금)]

- ▶ 강원경제자유구역청(동해) : 업무보고 및 간담회
-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현장시찰:
  - 천곡제일시장(동해)
  - 북평일반산업단지(동해)
  -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삼척)
  - 삼표시멘트(삼척)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 심사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홍)는 4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지난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 간 의석을 변경하는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강원자치도만의 특화된 커피산업 발전 도모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커피산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으로 시·군 지원 하에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석탄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산업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석탄 산업과 달리 석회석 폐광지역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물론, 폐광 이후 지역경제에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 비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과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 부위원장 **양속희**  
 위 원 **김기철, 김용래, 류인출, 이무철,**  
**하석균, 홍성기**

## 소관업무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SOC정책관, 소방  
 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9.(수)]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 [민생현장 방문 : 4. 9.(수) ~ 10.(목)]

- 홍천소방서 업무보고 및 직원 격려
- 홍천경찰서 간담회
- 수타사 관련 산불 예방 대책 논의 및 화재 예방 체계 점검



##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심사 및 민생현장 방문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4월 9일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였다.

김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 안전 교육과 지원을 통해 화재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이로써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원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하는 조례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하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가 시행된 후 4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연수원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례안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4월 9~10일 양일간 홍천군 일원에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첫째 날에는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소방과 치안 관련 주요 성과에 대해 청취하며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2일차에는 수타사를 방문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한 사찰 내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화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였다.

최규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치안 현장의 노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영욱** | 부위원장 **엄기호**  
 위 원 **김기하, 김길수, 심오섭, 원미희, 전찬성, 최재민**

## 소관업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



##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 [제1차 위원회, 4. 9.(수)]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 안전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 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 수정가결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 [제2차 위원회, 4. 10.(목)]

-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삼척, 태백, 고성, 강릉, 속초양양, 동해, 영월, 평창, 정선교육지원청)

### [제3차 위원회, 4. 11.(금)]

-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철원, 양구, 인제,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화천교육지원청)

## 조례안 13건, 보고 1건 심사 의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4월 9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소관 조례안 13건, 보고 1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4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가 이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중복 표현을 정비해 수정 가결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화 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정가결되었다.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원안가결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표현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선호도 반영 등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역시 원격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반면,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용어 정의와 사업 범위 불명확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각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 속에 모두 원안가결되었고,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은 '건축물'을 '교육시설'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에 따라 원안가결되었다.

4월 10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삼척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위원회는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 과학·정보·영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어 4월 1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철원교육지원청 등 8개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졌으며, 고등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습 선택권이 제한되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강원온라인학교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석** | 부위원장 **류인출**  
위원 **강정호, 김기홍, 김길수, 박길선,  
박대현, 유순옥,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하석균**

## 소관업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사전 검증



## 주요 활동내용

### [제1차 위원회, 4. 15.(화)]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위원장 선임의 건 : 최재석 의원 선임
-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류인출 의원 선임
- ▶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원안가결



## 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제진흥원장 후임인 서동면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5월 중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다.

금번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특위위원장에 최재석 의원, 부위원장에 류인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수** | 부위원장 **양속희**  
위원 **김왕규, 김용래, 박찬홍, 심영곤,  
심오섭, 원제용, 이승진, 전찬성,  
지광천, 한창수**

## 소관업무

·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사전 검증



## 주요 활동내용

### [제1차 위원회, 4. 15.(화)]

-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수 의원 선임
- ▶ 부위원장 선임의 건: 양속희 의원 선임
- ▶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 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다.

금번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특위위원장에 최종수 의원, 부위원장에 양속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현상 대표이사가 연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5월 중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 | 2025. 4. 1.(화) 원주



2025 강원 청소년도의회 | 2025. 4. 11.(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 | 2025. 4. 3.(목) 고성통일전망대



강원FC 정규리그 홈경기 참관 | 2025. 4. 12.(토)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제336회 안전건설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 2025. 4. 9.(수) 흥천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 | 2025. 4. 14.(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탁식 | 2025. 4. 14.(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군·관 소방응급 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 화재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 |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회복과 희망을 위한 호소문 |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 2025. 4. 15.(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0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 2025. 4. 16.(수) 횡성

# 사진으로 보는 의정



2025년도 저도어장 개장 | 2025. 4. 17.(목) 고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생각나눔, 공감더함 토크콘서트 | 2025. 4. 23.(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시 봉사회 방문 | 2025. 4. 21.(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 내방 | 2025. 4. 24.(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를 위한 분향소 방문 | 2025. 4. 23.(수) 춘천



인제군 산불현장 방문 | 2025. 4. 27.(일) 인제



동해

삼척

강원의 보물을 찾아서

글·사진 — 김남덕

### 동해

#### 동해 삼화사 철불

지난 1998년 12월 18일 보물제1292호로 지정된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은 동해시 삼화사 대웅전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철불이다.

삼화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이 불상은 시멘트로 만든 대좌 위에 머리로부터 가슴과 배, 등판을 붙여 안치했던 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철불좌상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은 듯하며, 얼굴에는 비교적 살이 올라 통일신라시대의 풍이 엿보인다. 가늘고 길게 뜯은 눈, 오뚝한 코, 두툼한 입술은 전체적으로 단정한 모습이다. 양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은 주름이 도식적이며, 복부까지 속이 드러나 허리띠와 드리워진 매듭이 보인다. 손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복원했다.



복원과정 중 오른쪽 등판면에서 약 10행 161자로 된 글을 발견하였다. 내용에 노사나불이란 명칭이 2번 나와 이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있으며, 시주자의 부모를 위해 880년대에 활약한 결연 스님을 중심으로 화엄경에 따라 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을 통해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세기 이후까지 내려오는 이두의 사용과 한자를 국어 어순에 맞추어 배열하는 문장 등으로 미루어 그 당시 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 삼척

### 죽서루

죽서루(竹西樓)는 삼척시 성내동 죽서루길 37에 있는 누각으로 관동팔경중 하나다. 죽서루와 그 앞을 지나 오십천(五十川)이 이루는 경관이 뛰어나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이 높았다. 죽서루는 1963년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이라는 명칭으로 명승 제2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3년 12월 28일 밀양 영남루와 함께 국보로 승격되었다.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 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읊은 시 등을 통해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되었으며, 처음에는 '서루(西樓)'로 불리다가 14세기후반에 들어서 '죽서루(竹西樓)'라 불리기 시작했다. 또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青記)』(1472),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竹西樓記)』(1662) 등에서 '1403년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로 창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 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전기에 재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증축되었으나 관련 기록이 잘 남아있으며, 조선 후기 증축된 이후 그 본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삼척 죽서루는 1403년 정면 5칸(측면 2칸)의 규모로 중창된 누정이었으나, 1530년 남쪽 한 칸(측면 3칸)이 증축되었고, 1788년 북쪽 한 칸(측면 2칸)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팔작지붕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5칸과 조선 중기 이후 확장된 좌·우측 1칸은 기둥 배열,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각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달리 보여주고 있다.



춘천

강원의 나무, 시간을 품다

글·사진 — 김남덕

| 춘천 가정리 은행나무

춘천 가정리 은행나무는 춘천시 남면일대에 고흥 류씨가 터를 잡기 시작한 때부터 같이한 나무다. 고흥 류씨 17세손 류숙은 1608년(선조41)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며 춘천과 인연을 맺는다.

북인계열에 있던 류숙, 류혁 형제는 인조반정으로 서인들이 집권하고 유배를 당하자 그 이후 춘천으로 낙향하게 된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인연과 류숙의 고모가 임진왜란 당시 피난생활을 한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때 만들어진 지역 사람들과의 인연이 춘천에 터를 잡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는 류숙의 부친 류몽표의 묘를 조성하면서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면 가정2리 은행나무는 2그루로 서로 30m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산 아래 은행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높이 21m, 나무둘레 9m나 되는 거목으로 강원-춘천-7호로 지정돼 있다.



논 중간에 있는 은행나무는 강원-춘천-6호로 지정됐으며 두 그루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한 그루였다고 한다. 높이 20m 둘레 5m30cm로 수령은 약480년 됐다.

나무를 마주하고 있으면 산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두 그루 모두 마을을 지키는 당산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500년 이상 신당을 지켜온 터줏대감답게 위엄이 있다.

산 아래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아직도 수많은 은행을 주렁주렁 달 정도로 건강하다. 500살 먹은 할머니 나무는 아직도 2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지구에서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은 앞으로도 영원해 보인다.

논 중간에 있는 은행나무는 벼가 고개를 숙일 가을에 봐야 제 맛이다. 노란 벼와 노란 은행잎이 만든 풍경은 마을 경치를 풍성하게 만든다.

# 강원의 드라이브 명소

쭉 뻗은 도로, 탁 트인 풍경, 창문을 열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진짜 드라이브 명소가 있습니다.

혼자서든, 함께든, 누구와 달려도 힐링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숨은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합니다.



## 1 양구 방산-해안도로 드라이브 (46번 국도)

- 양구 방산면에서 해안면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DMZ 접경지 풍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내내 탁 트인 평야, 산, 강이 번갈아 나오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 군사도로 특성상 평소 차량이 많지 않아 한적하게 달릴 수 있어요.

- 특징**
- ✓ 북한강 최상류 지점 통과
  - ✓ 드문드문 나오는 작은 마을 풍경

## 2 홍천 내촌-두촌 임도 구간 드라이브

- 홍천 내촌면과 두촌면을 연결하는 임도 구간은 숲속을 달리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 비포장 구간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 오프로드 감성 드라이브에 제격.
- 봄 신록 시즌이나 가을 단풍 시즌에 최고.

- 특징**
- ✓ 초록 터널 감성 구간 다수
  - ✓ 주말에도 한적한 로드

## 3 고성 화진포 해안도로 드라이브

- 화진포 호수와 동해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 도로 바로 옆이 바다라서, 커브를 돌 때마다 다른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드라이브 강추!

- 특징**
- ✓ 바다+호수 조망 가능한 절경
  - ✓ 코스 사진 스팟 곳곳 (갯길 주차 주의)
  - ✓ 평일 방문 시 거의 전세 느낌

## 4 인제 내린천 드라이브 + 카페투어

- 인제 내린천 주변을 따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는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 맑은 천 옆으로 이어진 완만한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감성 카페들도 있어 쉬어가기 좋습니다.
- 물소리 들으며 커피 한잔, 최고의 힐링!

- 특징**
- ✓ 내린천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 ✓ 카페, 쉼터 밀집 지역 존재
  - ✓ 여름철 청량감 200%

## 5 평창 봉평-흥정계곡 드라이브

- 대관령을 넘지 않고 평창 내륙 쪽에서 봉평, 흥정계곡을 연결하는 구간.
- 좁은 시골도로지만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계곡 소리가 들리는 곳도 많아 조용한 드라이브에 적합합니다.
-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기 전 새벽 드라이브 강추!

- 특징**
- ✓ 강변과 숲길이 번갈아 나오는 코스
  - ✓ 새벽 드라이브시 청량한 공기+새소리 감상
  - ✓ 인생샷 포인트 다수 존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숨은 드라이브 코스는 자동차 창문만 열어도 자연이 바로 스며드는 곳입니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됩니다.

이번 주말, 핸들만 잡고 천천히 달려보세요. 그 길 끝에, 생각지도 못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단,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